

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지침

제1조 (목적) 외국인학생장학금은 서울신학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가운데서 정원의 외국인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미래의 비전이 분명하고, 소명이 확실한 자로 국내·외 교계 및 학계의 지도자가 될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혜자격) 외국인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어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을 통과한 학생을 선별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장학대상이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 ①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부모 및 본인 모두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로, 선교단체 또는 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② 직전학기에 학부 12학점, 대학원 6학점, 신대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학기초과자 제외) <개정 2013.11.13>
- ③ 경건훈련 포함하여 직전학기 성적 중 F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3.11.13.>
- ④ 재학 중 유학생 보험을 가입 한 자. <개정 2013.11.13.>
- ⑤ 학교생활과 외국인유학생회 활동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외국인유학생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추천에 따라 장학금 차등지급 가능) <개정 2013.11.13>

제3조 (지급기간) 외국인학생장학금은 대상자가 위항의 수혜자격을 유지할 경우 정규학기에 한해 지급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외국인학생장학금은 외국인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5조 (지급방법) 외국인학생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처리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급액) 대학원 외국인학생장학금은 수업료(입학금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8 이상 (신대원 3.5이상) / 수업료의 50% 상당액
2.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4 이상 (신대원 3.2이상) / 수업료의 45% 상당액
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2 이상 (신대원 3.0이상) / 수업료의 40% 상당액

학부 외국인학생장학금은 수업료(입학금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 / 수업료의 50% 상당액
2.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8 이상 / 수업료의 45% 상당액
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6 이상 / 수업료의 40% 상당액 <개정 2013.11.13.>

제7조 (신청서류 제출) 장학 수혜자는 매학기 학기말고사 전까지 외국인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신청서와 보험증명서, 생활보고서를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3.>

부 칙

- ① (지침의 개폐) 본 지침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및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3.11.13.>
-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8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2조 ⑤항의 보험가입은 2013학년도 2학기는 권고, 2014년부터 시행한다.